

2018년 뉴욕시 헌장 개정 위원회

요약, 문항 제안 및 초록

1 Centre Street, 20th Floor
New York, NY 10007
(212) 386-5350



CHARTER
REVISION
COMMISSION

요약

2018년 2월 13일 시정 연설에서 Bill de Blasio 시장은 현장 개정 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 임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시장은 Cesar A. Perales를 위원장으로, 14인의 기타 저명하고 다양한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들의 경력과 약력은 최종 보고서 서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장 개정 위원회는 전체 뉴욕시 현장을 검토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결과와 현장에 대한 수정 또는 개정 권장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뉴욕 5개 모든 자치구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시민들에게 대민 접촉과 참여 과정에 있어 다양하고 뜻깊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서 고려할 만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는 4월 19일에 첫 공개 회의를 열었고, 이후 자치구마다 한 차례 공청회를 포함해 1차 공청회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그 밖에도 여러 언어를 포함해 이메일, 우편, 전화, 소셜 미디어 채널 및 자체 웹사이트로 많은 의견을 받기 시작했고,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위원회 직원들이 다양한 조직, 옹호 및 적합한 정부 단체, 시 기관의 대표자, 선출 공무원 및 이전 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시 정부 선거, 선거 자금 조달, 시민 참여, 시민사회 이사회 및 구획 절차의 다섯 가지 넓은 정책 분야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회의에서 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전문가와 현직자로부터 특정 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제 포럼을 계획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12일에는 투표 및 선거에 관해, 6월 14일에는 선거 자금 조달에 관해, 6월 19일에는 시민사회 이사회 및 토지 사용에 관해, 그리고 6월 21일에는 시민 참여 및 구획에 관해 주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위원과 직원은 지역사회 내 뉴욕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도 주최했습니다. 위원회는 Bay Ridge's P.S. 264에서 학생들로부터, Jackson Heights의 Queens Library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NYC Veterans Alliance 및 FDNY American Legion Post 930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거의 100명에 달하는 재향군인들로부터, 그리고 GrowNYC의 Grand Army Plaza Greenmarket에서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청회, 포럼 및 행사의 첫 주기 후 직원들은 7월 17일에 2018년 참모진 예비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거 자금 조달, 시 정부 선거, 시민 참여, 시민사회 이사회, 구획 절차 및 시 기관의 주제 및 제안과 같이 위원회에서 조사한 쟁점 분야를 비롯해, 시민들이 제기하였지만 직원들이 향후 고려를 위해 유보를 권장한 기타 주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후 5개 자치구에서 각 한 차례씩,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공청회를 열어 이 보고서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위원들과 직원들은 또 4,000명이 넘는

청취자가 참여한 tele-town hall과 Twitter town hall, 스테튼 아일랜드 St. George Greenmarket 의 의견 수렴 탁자, 뉴욕시의 하계 청소년 취업 프로그램(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참가 학생들과의 원탁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8월 14일 회의에서 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선거 자금 조달, 시민 참여, 시민사회 이사회 및 언어 접근성에 중점을 둔 제안을 반영해 최종 보고서, 투표 문항 및 초록을 준비하고, 향후 헌장 개정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에서 추가 제안 사항을 고려하도록 권장할 것을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 및 고려한 후, 아래와 같이 위원회의 헌장 수정안을 2018년 11월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투표 문항을 동반하는 초록과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자금 조달

위원회는 거액의 선거 자금 기부와 관련한 지속적인 부패 인식을 해결하고, 소액 기부자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선거 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거액 기부자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다양한 유형의 선거 활동을 진행하는 후보들을 위해 더욱 많은 기회 창출을 다루기 위해 시 당국의 선거 자금 조달 시스템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유권자들에 의해 채택될 경우, 이 수정 사항은

시 선출 사무소에 대한 기부금 한도를 대폭 줄입니다. 참여 후보자(즉, 시 당국의 공공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후보자)가 선거 주기당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총금액은 시장 또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5,100에서 \$2,000, 자치구 장 후보자의 경우 \$3,950에서 \$1,500, 그리고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2,850에서 \$1,000로 줄어듭니다. 비참여 후보자(즉, 시 당국의 공공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최대 총 후원 금액은 시장 또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5,100에서 \$3,500, 자치구 장 후보자의 경우 \$3,950에서 \$2,500, 그리고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2,850에서 \$1,500로 줄어듭니다.

시의 공공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자에 대한 소액 공공 보전금을 강화합니다. 현재, 참여 후보자는 특정 자격 충족 임계치를 충족하는 경우 후원자 1명당 보전 가능한 후원금 \$1당 공공 자금 \$6의 비율로 최대 첫 \$175까지 공공 보전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장 수정안에서는 시 전체 선출직 후보자의 경우 후원자 1명당 최대 첫 \$250까지, 자치구 장 또는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후원자 1명당 최대 첫 \$175까지 공공 보전금이 보전 가능한 개인 후원금 \$1당 공공 자금 \$8로 상향 조정됩니다. 수정안은 또 시장 또는 감사원장, 공익 옹호관 후보자의 경우 보전 자금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공 보전 자금을 증대합니다. 수정안에서는 선거당 참여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전 자금의 총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출마 직책에 대한 지출 제한의 55%에서 75%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한 후보자가 선거 연도 중 더 일찍 공공 보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법 하에서, 공공 자금 수령 자격 충족 임계치를 충족하는 참여 후보자(“자격 충족 후보자”)는 선거 연도 6월에 공공 자금을 최초로 소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공공 자금은 예비 투표 신청이 접수되고 2주 후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통상적으로 선거 연도 8월 초로 예비 선거로부터 약 5~6주 전입니다. 이 수정안은 자격 충족 후보자들이 선거 연도 2월과 4월에, 추가적으로 6월, 8월과 그 이후 공공 보전 자금을 받도록 허용하고, 8월 이전의 자금 지급에 대한 금전적 제한을 없애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 연도 8월 이전에 공공 자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충족 후보자들이 그러한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공개된 선거에서 인지도가 있는 후보자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 및 고려한 후, 아래와 같이 위원회의 현장 수정안을 2018년 11월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투표 문항을 동반하는 초록과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는 뉴욕시에서 시민 참여를 증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새 현장 기관인 시민 참여 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최다수 정당에서 최소 1인, 제2당에서 최소 1인을 포함해 시장이 8인을 임명하고, 시의회 대변인이 2인을, 그리고 각 자치구장이 1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시장이 자신이 임명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게 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을 겸하고 사무실의 조직 및 직원 구성의 책임을 맡습니다.

시민 참여 이사회는 늦어도 2020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까지 시장이 수립한 시 전체의 참여형 예산 계획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2020년도 총선거에 이행하게 되는 뉴욕시 내 투표소에 언어 통역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반 단체, 기관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시민 지도자의 시민 참여 노력을 지원 및 이들과 협력하고,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뉴욕 시민들의 언어적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 및 시행하고, 시 기관과 협력해 시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촉진에 있어 해당 기관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 기회에 대한 공공 정보를 중앙으로 집중화할 전략을 개발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시장은 행정 명령을 통해 현재 시장직 또는 시장이 부서장을 임명하는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권한 및 임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위원회는 또 참여형 예산 계획, 투표소 언어 지원 및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정보에 관해 연 1회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19년 4월 1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시민사회 이사회

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 이사회에서 대표하는 해당 시민사회를 더욱 잘 반영하고 그러한 대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다음의 수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임기 제한. 위원회는 모든 시민사회 이사회에 새로운 목소리와 지도자들에 대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2년의 임기를 제한 없이 재임하는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들에 대한 임기 제한을 제안합니다. 2019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임명 또는 재임명된 이사들에 대해서 2년 임기의 연속 횟수가 4회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2027년과 2028년도 이사회 이사들의 대대적인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임기에 대해 임명 또는 재임명되는 이사들은 최대 5기 연속의 2년 임기까지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후에 시작되는 임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임명은 4기 연속의 2년 임기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기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9년 4월 1일 또는 2020년 4월 1일 전에 시작된 임기는 그러한 일자에 시작되는 임기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연속 임기 수 동안 재임한 이사들은 1기의 임기 전체 동안 위원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임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임명 절차. 이사회는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들을 더욱 일관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임명의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서는 자치구 장에게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찾아 구하고 자체 웹사이트에서 이사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이 제안에서는 이사직과 그 모집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연례 보고서를 포함해 이러한 임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원 및 보고 요건을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 자원. 위원회는 유권자가 시민 참여 위원회의 창설을 승인할 경우, 도시 계획 전문가 및 언어 이용 자원을 포함한 추가 자원을 시민사회 이사회에 제공하도록 시민 참여 위원회에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더 효과적으로 그 현장 책임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기 제한 및 임명 절차에 관한 수정 사항은 2019년 1월 1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원에 관한 수정 사항은 2019년 4월 1일에 발효하게 되지만, 시민사회 이사회 및 시민 참여 위원회에 관한 투표 문항이 모두 유권자들에 의해 채택될 경우에 한합니다.

향후 고려를 위한 쟁점 사항

구획 절차

위원회는 또 구획 절차에 관해 상당한 양의 시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모든 10년 인구조사 이후 시장 및 시의회는 15명의 구획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 인구 변화 수용을 위해 시의회 지역구 경계를 구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획 계획은 2023년에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지역구 경계를 구획하는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i) 구획 위원회의 임명 절차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 및 다양성 증진, ii) 투명성 및 공공 참여의 보장, iii) 투표 권리법(Voting Rights Act)의 사전 권한 조정 기제 소실 후 뉴욕시 소수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 및 iv) 2020년 미국 총 인구조사(U.S. Census)에서 잠재적 과소집계에 대한 대처의 네 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것이 긴급한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타당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시민 제안을 신중히 고려한 후,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유권자에게 제출할 것으로 권장하기 전에 깊이 있는 연구, 대민 접촉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한 증언을 고려해, 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모든 뉴욕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구획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고안된 수정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위원회에 본 사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순위 선택 투표 방식

위원회는 또 순위 선택 투표에 관해 상당한 양의 시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시 선출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순위 선택 투표 방식(소위 “즉석 결선 투표(instant runoff voting)”)을 실시하는 현장 수정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복수의 후보자 순위를 매기도록 허용하는 투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신중히 고려한 후,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깊이 있는 연구, 대민 접촉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위원회 또는 기타 입법 기관에서 이러한 제안이 우리의 지방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에 대해 제기하는 중요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향후 투표 제안을 제시하거나 이를 다루는 법안을 통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선거 현대화

전문가, 옹호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는 뉴욕시 내 투표율을 높이는 유의미한 방법은 참여에 상당한 장벽을 초래하는 구시대적인 주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자 선거인 명부, 무사유 부재자 투표, 당일 등록, 16 및 17세 대상 사전 등록 및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의 간소화라는 분야에서 주의 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정부 조직 및 시민사회 우려 사항

전체 현장을 검토하는 권한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시 정부의 기능 및 절차와 시 선출 공무원 간의 힘의 균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시민사회 및 단체의 관점에서 시 정보의 건전성과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 투표 제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지만,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 위원회의 현장 검토에 있어 귀중한 지침 역할을 한 이러한 주제의 많은 부분을 논할 것입니다.

현장 수정안

A. 선거 자금 조달

투표 문항 #1: 선거 자금 조달

본 제안은 뉴욕시 선출직 후보자가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시 현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 공공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받는 후원금의 일정 금액만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공공 자금을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제안은 자금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참여 후보자는 선거 연도 초반에 공공 보전 자금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또는 감사원장, 공익 옹호관 후보자의 경우 보전 자금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정 사항은 2021년도 예비 선거부터 선거 운동에 이를 적용하기 원하는 후보자에게 적용되며, 이후 2022년부터는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초록

본 제안은 시 선출직 후보자가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시 현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 공공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받는 후원금의 일정 금액만큼 보전하는 데 사용되는 공공 자금을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제안은 자금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참여 후보자는 선거 연도 초반에 공공 보전 자금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또는 감사원장, 공익 옹호관 후보자의 경우 보전 자금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완화하게 됩니다.

후원금 제한. 현재, 후보자가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거 주기당 최대 총금액(예비 선거 및 총선거 포함)은 (a) 시장 또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시 전체 선출직”) 후보자의 경우 \$5,100 (b) 자치구 장 후보자의 경우 \$3,950 그리고 (c)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2,850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공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자(“참여 후보자”)와 참여하지 않는 후보자(“비참여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물가 상승률과 연동됩니다.

현장 수정안 하에서는 이러한 후원금 제한이 하향 조정됩니다. 참여 후보자가 선거 주기당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총금액은 시장 또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2,000, 자치구 장 후보자의 경우 \$1,500 그리고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1,000가 됩니다. 비참여 후보자가 선거 주기당 후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총금액은 시장 또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우 \$3,500, 자치구 장 후보자의 경우 \$2,500 그리고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1,500가 됩니다. 참여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제한안이 비참여 후보자보다 낮은 것은 참여 후보자만이 공공 보전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안은 주식회사, LLC 및 합명회사로부터의 후원금에 대한 금지 사항과 로비스트 및 시와 함께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의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후원자의 신분에 근거한 기존의 금지 사항 및 제한 규정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후원금 제한은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과 연동됩니다.

직책	현재 제한	제한안 (참여자)	제한안 (비참여자)
시 전체 선출직	\$5,100	\$2,000	\$3,500
자치구 장	\$3,950	\$1,500	\$2,500
시의원	\$2,850	\$1,000	\$1,500

공공 자금 보전 공식. 현재, 참여 후보자는 특정 자격 충족 임계치를 충족하는 경우 후원자 1명당 보전 가능한 후원금 \$1당 공공 자금 \$6의 비율로 최대 첫 \$175까지 공공 보전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의 후원금을 받으면 현재는 공공 자금에서 \$1,050(6 x \$175)를 보전받아 해당 후보자에게 총 \$1,550가 주어집니다.

현장 수정안 하에서는, 시 전체 선출직 후보자의 경우 후원자 1명당 최대 첫 \$250까지, 자치구 장 또는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후원자 1명당 최대 첫 \$175까지 공공 보전금이 보전 가능한 개인 후원금 \$1당 공공 자금 \$8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시 전체 선출직 후보자의 경우 \$500의 후원금을 받으면 공공 자금에서 \$2,000(8 x \$250)를 보전받아 해당 후보자에게 총 \$2,500가, 자치구 장 또는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500의 후원금을 받으면 \$1,400(8 x \$175)를 보전받아 총 \$1,900가 주어집니다. 이 수정안은 로비스트 및 시와 함께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의 후원과 같은 특정 후원금은 공공 보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은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책	현재 보전 비율	수정 보전 비율
시 전체 선출직	첫 \$175에 대해 6:1	첫 \$250에 대해 8:1
자치구 장	첫 \$175에 대해 6:1	첫 \$175에 대해 8:1
시의원	첫 \$175에 대해 6:1	첫 \$175에 대해 8:1

공공 자금 최대 금액("공공 자금 상한선"). 현행법 하에서는 선거당 참여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전 자금의 총금액은 출마 직책에 대해 참여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지출 제한의 55%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정안 하에서는 선거당 참여 후보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전 자금의 총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출마 직책에 대한 지출 제한의 55%에서 75%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고 이번 수정으로 변경되지 않는 현행 지출 제한에 근거해, 후보자가 가용할 수 있는 공공 보전 자금의 최대 금액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직책	현행 공공 자금 상한선 (지출 제한의 55%)	공공 자금 상한선안 (지출 제한의 75%)
시장	\$4,007,300	\$5,464,500
감사원장 또는 공익 옹호관	\$2,505,250	\$3,416,250
자치구 장	\$902,000	\$1,230,000
시의원	\$104,500	\$142,500

자격을 충족하는 임계치. 현재 공공 자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참여 후보자는 최소한 특정 임계치 달러 금액(직책에 따라 다름)에 이르는 보전 가능한 후원금을 모금해야 하며, 기부자 1명당 첫 \$175만 산정됩니다. 수정안은 금전적 임계치는 변경하지 않을 것이나, 시 전체 선출직 후보자들의 경우 그러한 직책에 대한 보전 공식의 변경을 추적하여 기부자 1명당 첫 \$250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 전체 선출직 후보자들이 보전 자금 자격을 충족하기가 다소 쉬워집니다.

공공 자금 지급 시기. 현행법 하에서, 공공 자금 수령 자격 충족 임계치를 충족하는 참여 후보자("자격 충족 후보자")는 선거 연도 6월에 공공 자금을 최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은 시장 후보자의 경우 \$250,000, 감사원장 및 공익 옹호관의 경우 \$125,000, 자치구 장 후보자의 경우 \$50,000 그리고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10,000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공공 자금은 예비 투표 신청이 접수되고 2주 후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통상적으로 선거 연도 8월 초로 예비 선거로부터 약 5~6주 전입니다.

이 수정안은 자격 충족 후보자들이 선거 연도 2월과 4월에, 추가적으로 6월, 8월과 그 이후 공공 보전 자금을 받도록 허용하고, 8월 이전의 자금 지급에 대한 금전적 제한을 없애게 됩니다. 그러나, 자격 충족 후보자는 자금을 대한 필요성을 증명하고 현행법의 조항(공공 자금을 특정 금액 이상 받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경쟁 후보자의 재정 상태가 탄탄하거나 공개된 선거에서 인지도가 있는 후보자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인증을 받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선거 연도 8월 이전에 공공 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행. 선거 자금 조달에 관한 현행 수정안은 수정 사항을 2021년 예비 선거로 시작되는 선거 운동에 해당 수정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참여 후보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수정 사항은 그 후 2022년을 시작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정 후 시스템 하에서 2021년도 예비 및 총선거에 임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2019년 1월 12일 전까지 수령하는 선거 후원금을 그러한 후원금이 수정 전 법을 준수하는 정도까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러한 후원금은 수정 전 법에 따라 공공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시민 참여

투표 문항 #2: 시민 참여 위원회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Civic Engagement Commission)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늦어도 2020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뉴욕시 회계 연도부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수립한 참여형 예산 계획 프로그램을 이행합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는 기타 뉴욕시 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 단체, 시민 리더들과 협력해 시민 참여 노력을 지원 및 장려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2020년도 총선거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뉴욕시 투표소에 다양한 언어의 통역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은 특정 기타 시 기관의 관련 권한과 임무를 이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시민 참여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8인과 시의회 대변인이 임명하는 2인, 자치구 장이 임명하는 각 1인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이 되고 이 위원장이 위원회 직원을 고용 및 지휘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초록

이 제안은 시민 참여를 증진하고, 시민 신뢰를 촉진하고, 뉴욕시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민 참여 위원회의 수립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5인 가운데, 최다수 정당에서 최소 1인, 제2당에서 최소 1인을 포함해 시장이 8인을 임명하고, 시의회 대변인이 2인을 그리고 각 자치구 장이 1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시장, 대변인과 자치구 장은 이민자, 제한적인 영어 구사자, 장애가 있는 자, 청소년, 고령자, 퇴역 군인, 지역사회 단체, 좋은 정부 단체, 민권 운동가 및 달리 역사적으로 대표자가 불충분하였거나 시 정부의 봉사를 충분히 받지 못한 주민 범주의 대표자이거나 이와 함께 협력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고려할 것이 요구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시 주민이어야 하며, 정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시장,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자치구장 또는 시의원직 임명 또는 선거의 후보가 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장의 뜻에 따라 재임하는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임하게 됩니다. 단, 2019년 4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최초 피임명자들은 2년에서 4년에 이르는 임기를 재임하게 됩니다. 이는 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다르게 하여, 위원회의 전면 교체를 방지하고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총장으로도 재임하게 될 위원장은 시장이 시민 참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사무총장은 이 조직과 직원 충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는 적절한 조정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지게 됩니다.

- 늦어도 2020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까지 이행해야 하는 시장이 수립한 시 전체의 참여형 예산 계획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참여형 예산 계획 자문 위원회를 창립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 단체, 기관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시민 지도자의 시민 참여 노력을 지원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합니다.
-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 및 이행함에 있어 뉴욕의 제한적 영어 구사자들의 언어 접근 필요를 고려하는 계획을 개발합니다.
- 2020년도 총선거에 이행하게 되는 뉴욕시 내 투표소에 언어 통역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을 제공하는 언어 지원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 뉴욕시 기관과 협력해 시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개발 및 촉진에 있어 해당 기관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 기회에 대한 공공 정보를 중앙으로 집중화할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 위원회는 또 참여형 예산 계획, 투표소 언어 지원 및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정보에 관해 연 1회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시장은 행정 명령을 통해 현재 시장직 또는 시장이 부서장을 임명하는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권한 및 임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관할 기관의 부서장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하고 지원을 제공할 것이 요구됩니다.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19년 4월 1일 자로 발효됩니다.

C. 시민사회 이사회

투표 문항 #3: 시민사회 이사회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기 제한 제도로의 최초 전환에 대해 특정 예외를 두되,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에 대해 최대 4기 연속의 2년 임기로 임기 제한을 부여합니다.

자치구 장은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를 임명할 때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제안은 또 이러한 임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원 및 보고 요건을 추가합니다.

질문 2, “시민 참여 위원회”가 승인되면, 제안된 시민 참여 위원회는 토지 사용 및 기타 사안과 관련된 자원, 지원 및 교육을 시민사회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초록

시의 시민사회 이사회는 토지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에서 시 헌장에 의해 지정되는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자문 단체입니다. 이 헌장 수정안은 (a) 새로운 임기 제한 시스템으로의 최초 전환에 대해 특정 예외를 두되,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에 대해 최대 4기 연속의 2년 임기로 임기 제한을 부여하고, (b) 자치구 장에게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을 찾아 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임명과 관련해 지원 및 보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c) 제안된 시민 참여 위원회에 토지 사용 및 기타 사안과 관련된 자원, 지원 및 교육을 시민사회 이사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임기 제한.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는 시의원 및 지역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구 장이 임명합니다. 각 지역사회 지구에 대해 자치구 장이 시차를 두고 2년 임기로 최대 50인의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를 임명합니다. 현행 헌장은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들에 대해 임기 제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명 및 재임명에 대한 임기를 시작으로 이사회 이사 임명을 최대 4기 연속의 2년 임기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7년과 2028년도 이사회 이사들의 대대적인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4월 1일에 시작되는 임기에 대해 임명 또는 재임명되는 이사들은 최대 5기 연속의 2년 임기까지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후에 시작되는 임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임명은 4기 연속의 2년 임기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기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9년 4월 1일 또는 2020년 4월 1일 전에 시작된 임기는 그러한 일자에 시작되는

임기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연속 임기 수 동안 재임한 위원들은 1기의 임기 전체 동안 위원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임명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임명 절차. 현장은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들의 후보 지명 및 임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자치구 장은 지역사회 지구 내 여러 다른 지리적 구획과 지역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피임명자들의 전체 구성이 해당 지역사회의 전 부문을 공정히 대표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시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사회 지구에 주거, 사업,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명된 이사 중 시 직원의 비율은 25%를 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자치구 장의 직원 또는 시의원 후보 지명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사들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시민사회 이사회에서 18세 미만인 이사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안은 자치구 장에게, 시민사회 이사회에서 대표자가 불충분한 집단 및 지역사회 다양성 및 포용성을 촉진함에 있어 자치구 장이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타 요인을 비롯해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성적 지향성 및 언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시민사회 이사회 임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제안은 또 자치구 장에게 자체 웹사이트에서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지원 시 지원자에 관한 특정 정보, 즉, 이름, 주소, 거주지, 사업, 직업 또는 해당 지역사회 지구와의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 시민사회 이사회 과거 역임 사항, 나이, 근로 및 교육 이력, 특별 기술 및 전문 면허, 관련된 직업적, 시민적 또는 지역사회 참여 경험, 지원자가 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신상 정보를 제공할 옵션 및 자치구 장이 지원 절차와 연관하거나 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원 시에는 해당 직책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진술, 시 고용 및 잠재적 이해의 상충에 관한 공개 및 해당 지원자가 해당 직책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해당되는 모든 이해의 상충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 제안은 자치구 장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해 이후 연 1회,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들과 그 모집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보고서를 시장 및 시의회 대변인에 제출하고, 이를 자치구 장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공석인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직 수, 시민사회 이사회의 공석 이사직에 대한 지원자 수, 면담을 진행한 지원자 수와 이사들의 이름 및 임명 또는 재임명 일자, 재임 기간, 후보를 지명한 시의원 또는 기타 후보 지명 단체 및 있는 경우 시민사회 이사회 리더십 직책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또 자발적 의사로 공개된 익명의 집계 형식의 시민사회 이사회 이사들에 관한 신상 정보, 다양하고 포용적인 후보자 군을 촉진하기 위한 대민 노력 및 방법을 포함해 후보자 모집 및 공석 충원을 위한 자치구 장의 계획, 자치구 장이 이사를 선정할 때 사용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및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구 장이 사용한 도구가 포함됩니다.

지원 및 교육. 이 제안은 적절한 조정을 조건으로 하여 도시계획부, 기타 관련 시 기관 및 자치구 장과의 협의 및 조율 하에, 시민사회 이사회에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현재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 이상으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것을 시민 참여 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는 토지 사용 사안과 관련된 도시 계획 및 기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업체, 전문 인력 또는 컨설턴트를 파악하고, 요청 시 시민사회 이사회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집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지원이 모든 시민사회 이사회에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그들의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시민사회 이사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단을 제공할 것이 요구됩니다. 시민 참여 위원회는 또 시장실 산하 이민자 사안 사무실과의 협의 하에, 직원 교육 및 언어 지원 도구와 같이 제한적 영어 구사자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하는 서비스를 파악 및 제공할 것이 요구됩니다. 제안의 이 요소는 이 투표 질문과 시민 참여 위원회 설립에 관한 투표 질문이 모두 승인되는 경우에만 발효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또 시민사회 이사회에 예정된 회의에 대한 적절한 대민 알림, 이전 12개월간의 과거 회의의 의사록 및 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 관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보기술 및 이동통신부(DOITT)는 웹사이트의 개설, 관리에 있어 시민사회 이사회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사회 이사회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함에 있어 자치구 장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 요구됩니다.

발효일. 이상의 수정 사항은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단, 제안된 시민 참여 위원회에 시민사회 이사회에 대한 자원 제공을 요구하는 수정 사항은 2019년 4월 1일에 발효됩니다.